

특허청 공고 제2020 - 76호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지정 기간의 직권 연장 공고

국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출원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붙임]에서 열거한 지정 기간이 2020년 3월 31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의 기간안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 「상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일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특 허 청 장

특허심판원장

[참고 사항]

1. 특허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 기간, 당사자간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기간 등은 이번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기간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연장된 기간을 [붙임] 목록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 등의 제출이 있으면 기간단축신청이 없더라도 불필요한 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1. 특허법 시행령 제10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 취급규정 제60조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기간
2.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승인(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사관에 의해 승인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의견서(소명서) 제출기간
3.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우선권증명서류의 국어번역문 제출요구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4. 특허법 시행규칙 제46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선출원국의 심사결과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 명령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5. 특허법 제36조, 실용신안법 제7조에 따른 협의요구에 대한 신고기간
6. 특허법 제63조, 실용신안법 제14조에 따른 거절이유(최후 거절이유 통지를 포함한다)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7. 특허법 제63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3에 따른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기간
8. 특허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 실용신안법 제22조의6에서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14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9. 특허법 제211조, 실용신안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1조의 국제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에 대한 문헌의 사본 제출기간
10. 특허법 제222조, 실용신안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 요청(심사참고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서류 등(심사참고자료)의 제출기간

11. 특허법 제58조,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심사의견문의를 위한 의뢰서 등 부분송달에 대한 의견서 등 제출기간
12. 구특허법(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이전) 제70조, 구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이전)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구특허법 제7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부분 송달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3. 구특허법(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이전) 제52조, 구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이전) 제16조 및 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 제25조에 따른 분할출원불인정예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14. 특허법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제출기간
15.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9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제출기간

[상표]

16. 상표법 제35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1에 따른 협의요구에 대한 신고기간
17. 상표법 제44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에 따른 변경출원 불인정 예고통지에 대한 의견(답변, 소명)서 제출기간
18. 상표법 제45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에 따른 분할출원 불인정 예고통지에 대한 의견(답변, 소명)서 제출기간
19. 상표법 제46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에 따른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불인정 예고통지에 대한 의견(답변, 소명)서 제출기간
20. 상표법 제47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 불인정 예고통지에 대한 의견(답변, 소명)서 제출기간
21. 상표법 제55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상표법 제180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은 제외한다)

22. 상표법 제56조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 요청(심사참고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서류 등(심사참고자료)의 제출기간
23. 상표법 제66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7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부분 통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24. 상표법 제66조,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PROVISIONAL REFUSAL BASED ON AN OPPOSITION)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5. 상표법 제205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불인정 예고 통지(재출원불인정예고통지)에 대한 의견(답변, 소명)서 제출기간
26. 상표법 시행령 제13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에 따른 우선 심사신청서의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기간
27.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1조에 따른 심사재개통지에 대한 보정서 제출기간
28.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에 따른 거절예고 통지에 대한 보정서 제출기간
29. 상표법 제17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에 따른 지정기간연장 승인(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사관에 의해 승인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의견서(소명서) 제출기간
30. 상표법 제37조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한 절차보완서 제출기간

[디자인]

31.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에 따른 협의요구에 대한 신고기간
32.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71조,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에 따른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불인정 예고통지에 대한 의견(답변, 소명)서 제출기간

33.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71조,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에 따른 신규성의제 불인정 예고통지에 대한 의견(답변, 소명)서 제출기간
34. 디자인보호법 제63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35.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제46조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요구에 대한 보완기간
36.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71조,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에 따른 분할출원 불인정 예고통지에 대한 의견(답변, 소명) 제출기간
37.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91조,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제36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분 통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38.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문 제출요구에 대한 한글번역문 제출기간
39.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승인(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사관에 의해 승인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의견서 (소명서) 제출기간
40. 디자인보호법 제213조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 요청(심사참고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서류 등(심사참고자료)의 제출기간
41. 디자인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한 절차보완서 제출기간

[심판]

42. 특허심판원장이 민사소송규칙 제109조를 준용하여 심판청구서(취소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번역문 미제출 포함)을 보충하도록 통지한 보충요구서에서 정한 기일

43. 특허심판원장이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에 대하여 의견서(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최고서에서 정한 기일
44. 특허심판원장이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최고서에 대하여 작성한 의견서(소명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한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 부분송달서'에서 정한 기일

[기타]

45. 특허법 제22조제5항, 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조, 디자인보호법 제24조제4항, 상표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중단된 절차의 수계를 명하는 절차 수계 명령(특허청장이 절차의 수계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정한 (수계신청)기간
46.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특허법 제46조, 특허법 제203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6조, 디자인보호법 제47조, 상표법 제39조에 따라 통지한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의견서) 제출기간
47.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이유를 통지하는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기간

(끝)